

『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주민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과대·과소한 통·리·반을 분리 또는 통폐합하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18개 통·리 증설

(안 별표 1, 별표 2, 별표 7, 별표 15, 별표 18, 별표 19, 별표 26, 별표 27)

- 통·리 : 649개 통·리(통 473, 리 176)

⇒ 667개 통·리(통 485, 리 182)

- 선산읍(증1개리) : 교리 이편한세상 신축(교2리 신설)
- 고아읍(증2개리) : 문성 파크자이 신축(문성7리 신설)
문성 서희스타힐스 신축(문성8리 신설)
- 산동면(증3개리) : 중흥S클래스 2차 신축(인덕4리 신설)
우미린5차 센트럴파크 신축(신당3리 신설)
골드클래스 신축(신당4리 신설)
- 형곡1동(증2개통) : 과밀통 분리(24통, 25통 신설)

- 신평2동(증1개통) : 신평 이편한세상 신축(8통 신설)
 - 비산동(증3개통) : 비산 코오롱하늘채 신축(9통, 10통, 11통 신설)
 - 진미동(증3개통) : 과밀통 분리(24통, 25통, 26통 신설)
 - 양포동(증3개통) : 과밀통 분리(54통 신설)
- 옥계 세영리첼 신축(55통, 56통 신설)

○ 168개반 증설

(안 별표 1, 별표 2, 별표 7, 별표 15, 별표 18, 별표 19, 별표 26, 별표 27)

- 반 : 4,668개반 ⇒ 4,836개반(168개반 증가 - 증204반, 감36반)
 - 선산읍(증24) : 교리 이편한세상 신축(교2리 24개반)
 - 고아읍(증50) : 문성 파크자이 신축(문성7리 27개반)
문성 서희스타힐스 신축(문성8리 23개반)
 - 산동면(증51) : 확장단지 중흥S클래스 2차 신축(인덕4리 21개반)
확장단지 우미린5차 센트럴파크 신축(신당3리 18개반)
확장단지 골드클래스 신축(신당4리 12개반)
 - 형곡1동(증7) : 금호어울림포레 신축(2통 1~8반→2통 1~12반)
과밀통 분리(10통 1~15반 → 10통 1~7반, 24통 1~8반)
정인펠리체 신축(12통 1~3반 → 12통 1~6반)
과밀통 분리(13통 1~7반 → 13통 1~3반, 25통 1~4반)
 - 신평2동(감1) : 과밀통 조정, 분리 및 통명칭 변경
(7통 1~5반 → 5통 1~5반)
신평 이편한세상 신축(7통 1~5반, 8통 4개반)
 - 비산동(증15) : 코오롱하늘채 신축(9통 6개반, 10통 5개반, 11통 4개반)

- 진미동(감2) : 과밀통 분리(3통 1~8반 → 3통 1~4반, 24통 4개반)
 과밀통 조정(5통 1~6반 → 5통 1~3반)
 과밀통 조정(6통 1~5반 → 6통 1~4반)
 과밀통 조정(16통 1~4반 → 16통 1~3반, 17통3반)
 과밀통 조정, 분리 (17통 1~4반, 18통 1~6반 →
 17통 1~2반, 18통 1~5반, 25통 3개반)
 과밀통 분리(21통 1~4반 → 21통 1~3반, 26통 3개반)
- 양포동(증24) : 과밀반 분리(8통 1~5반 → 8통 1~6반)
 과밀통 분리(44통 1~14반 → 44통 1~7반, 54통 7개반)
 세영리첼 신축(55통 11개반, 56통 12개반)

○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·누락 지번 정정

(안 별표 2, 별표 7, 별표 19, 별표 26)

- 고아읍 : 원호5리, 원호7리, 원호9리, 원호10리 오류 정정 등
- 산동면 : 봉산2리 1반 지번 정정 등
- 비산동 : 2통, 3통, 7통, 8통 관할 구역 지번 추가
- 진미동 : 3통, 16통, 21통 관할 구역 지번 추가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통리 증감에 따른 「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」 일부개정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18개 통·리와 168개반을 증설하고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·누락 지번을 정정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
-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